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 2016. 3. 31.] [조례 제2286호, 2016. 3. 31., 일부개정]



전라남도 강진군(세무회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강진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강진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제3조(적용범위) ① 강진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강진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계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08. 21.>

제4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08. 02.>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01.
08. 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장으로 하며,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08.
02.>

제4조의4(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06. 23.>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
3. 발행일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개정 1993. 11. 04.>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증지 인수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강진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강진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인 지정) ① 증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민원인이 상시 매입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9. 30.>

③ 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 또는 읍면장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을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04.>

제8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 3. 3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형집행 완료자는 제외 <단서신설 1999. 09. 30.>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9조(판매인 지정신청) ①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에관계증빙서를 첨부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9. 30.>

② 삭제 <1993. 11. 04.>

③ 군수 또는 읍면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 교부를 받을 군명을 군공보에 즉시 고시한다. <개정 1999. 09. 30.>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 08. 10.>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예정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09. 30.>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 이내에 수입증지 판매인신고필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9. 30.>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직장근교는 제7조제5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판매는 판매인이 신고하여 승인된 장소에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999. 09. 30.>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9. 30.>

② 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 1999. 09. 30.>

③ 읍면장이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9. 30., 2013. 12. 11.>

제15조 <삭제 2000. 08. 10.>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9. 30.>

제17조 삭제 <1999. 9. 30>

제18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9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경우와 계기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11. 04., 1998. 08. 13.>

제20조(계기사용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8. 02.>

②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 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3. 11. 04.>

제22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2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은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제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5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 한 후 제14조에 딸, ㄴ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 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 교부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16조제3항의 매매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9. 30.>

제26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환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비치 및 조사) 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민간인 지정자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1999. 09. 30.>

②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04. 18.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02. 27.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08. 17.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2. 23.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03. 0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06. 05.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06. 29.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07. 1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05. 0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26.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8. 0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04.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 후단의 단서규정은 1993년 10월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08. 2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8. 13.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9. 30. 조례 제16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증지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판매인으로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08. 10.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8. 02.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6. 23.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